

세이브더칠드런

「 2021 난민아동지원사업 」

협력기관 공모 안내문

2021. 1.



목 차

I. 세이브더칠드런 소개

II. 난민아동지원사업 소개

1. 사업배경
2. 사업개요

III. 선정기준

1. 필수조건
2. 심사기준
3. 심사방법
4. 심사결과 발표

IV.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 신청 시 접수할 서류
3. 서류양식 배포처
4. 접수방법

V. 일정 및 선정 절차

【 참고자료 】 아동안전보호정책 요약본

I. 세이브더칠드런 소개

- 세이브더칠드런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아동들의 구호와 복지, 그리고 권리실현을 위해 영국에서 창설되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각지에서 빈부,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보호되며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 한국에서의 세이브더칠드런 활동은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를 위한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며,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국내의 아동권리옹호, 아동보호, 보건의료, 아동교육 및 발달 지원사업과 국제개발사업, 인도적 지원(긴급구호)사업 등을 활발하게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II. 난민아동지원사업 소개

1. 사업배경

- 우리나라가 처음 난민 신청을 접수한 1994년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총 64,357명이 난민으로 신청하였고, 이 중 1,022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2,217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3,239명(11.3%)이 난민인정(보호)을 받고 있음. 2019년 한 해 난민신청자는 15,451명이었고 이는 2010년 423명 대비 약 37배 증가한 수치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9년 한 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난민인정률은 단 1.4%, 인도적 체류 허가로 인한 난민보호율은 5.6%에 불과하며¹, 이는 전 세계 난민협약국 평균 난민보호율 38%를 크게 밑도는 상황임.
- 2019년 한 해 난민 인정자는 전체 79명에 불과하나 이 중 만 18세 미만 난민인정자는 37명으로 전체의 46.8%를 차지하고 있으며², 같은해 인도적 체류자 현황을 살펴보다도 전체 232명 중 18세 미만 아동이 41명으로 전체의 17.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난민들의 한국 내 삶의 질은 여타의 이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³ 성인 난민의 낮은 삶의 질 및 사회적 지위는 이들이 양육하는 아동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됨⁴.
-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역사회 대표 난민NPO활동기관 두 곳으로부터 현장의 난민아동 권리침해 실태를 청취하고 그들의 제안을 참고해 2011년 난민아동지원사업을 통해 난민아동을 지원해오고 있음. 사업초기에는 SCK 본부 주도 사업으로 시작되어 난민아동이 포함된 가정에 양육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난민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음. 이후 2016년부터는 가정 단위가 아닌 아동 단위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내용 역시 양육비/보육비/교육비로 세분화하였음. 이후 2019년부터는 본부가 아닌 각 지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내 난민아동 가정 및 협력기관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하게 되었고, 2021년 현재에는 아동 개인별 양육비, 보육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형태를 갖추게 됨.

¹ 법무부. 2019년 12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² 법무부. 2019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9년

³ 김현미 외(2010).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법무부

⁴ 김현미 외(2013). 한국 거주 난민아동 생활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연구, 세이브더칠드런

-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함으로써 난민아동의 건강권, 교육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명시되었으나 현장의 지원체계는 난민법 제정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때까지 이들의 생존·보호·발달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난민아동지원만을 특화해서, 또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이 유일함.
-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관할 지역 내 협력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난민아동이 최소한의권리를 보장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 보육비,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특별히 2021년에는 협력기관에 대한 방문 모니터링 강화(예산 사용의 투명성, 사례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 대상 가정에 대한 방문/유선 모니터링 등을 통해 난민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2. 사업개요

- 1) **사업대상:** 서부지부 사업3팀 관할지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내 거주하는 만7세 이하 미취학아동
(난민 신청자, 인도적체류허가자, 난민불허판정 후 체류기간 초과자에 한하며, 난민인정자는 제외)

- 2)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12개월)

3) 주요사업내용

구분	내용	시기
업무협약 체결	- 협력기관&세이브더칠드런 업무협약 체결	2021. 2월
실무자 간담회 및 교육	- 사업 O.T / 아동안전보호정책 교육 실시 - 사업 실무자 간담회 및 교육 참석(필수)	2021.3월
사업운영	- 난민아동 지원(매월 아동별 양육비, 보육비 지급) - 난민아동 의료비 신청 및 지원(필요시) - 난민아동지원사업 아동리스트 관리(대기자 명부 별도 구비) - 난민아동 가정방문 모니터링 진행(지원아동 10%) - 난민아동 유선 모니터링 진행(전수 대상)	2021.3월 ~ 12월
협력기관 모니터링 협조	- 협력기관에 대한 방문 모니터링 진행 협조 (연2회 필수, 아동안전보호정책 준수 여부, 관련 서류 현황 점검 등)	2021.3월 ~ 12월
운영보고	- 분기별 정산서 및 증빙서류, 아동리스트 제출(분기1회) - 가정방문 및 유선 모니터링 점검 결과 제출 - 최종 사업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연1회) (운영비 증빙 영수증 원본, 전용계좌 통장 내역 사본 등)	2021.3월 ~ 12월

※ 사업운영의 세부 일정 및 지원 예산의 경우 협력기관 선정 후 협의 통해 최종 결정

4) 모집기관

- 난민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아동지원금 지급, 사례관리 등) 진행 가능한 기관 2개소

5) 지원예산

- 각 기관별 아동지원금 지원 및 기관 운영비(아동지원금 12%) 지원
- 최종 협력기관 선정 후 세부 내용에 따른 예산 편성

III. 선정기준

1. 필수조건(※하나라도 미충족시 탈락)

- 1) 사업전담 가능 여부
 - 협력기관 소속의 세이브더칠드런 사업 담당자 1인을 지정하고 사례관리 업무를 배정 받은 인력이 상주함
- 2)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
 -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설명회, 모니터링, 간담회, 아동안전보호 정책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 가능함
- 3) 기관운영의 투명성
 - 최종 사업결과보고 시 운영비 증빙 영수증 원본 및 전용계좌 통장 내역 사본 제출을 통해 운영상의 투명성을 증명 가능함
- 4) 필수서류 2종 제출 완료
 - 2020년 난민아동지원사업 협력기관 신청서 1부
 - 세이브더칠드런 사업 전용계좌 통장 사본 1부

2. 심사기준

협력기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함

- 1) **지리적 위치:** 본 기관에서 실제로 사례관리 가능한 지역, 해당지역 내 타기관 대안 여부, 지역 특성, 난민아동지원 희망 수요 등
- 2) **실무자 규모:** 본 사업의 사례관리를 발굴/관리할 수 있는 실무자의 수
- 3) **사업수행 역량:** 협력기관 담당자의 사업 목적 이해 정도, 사례관리 업무 이행 계획, 사업비(운영비 포함) 운영 계획 등

3. 심사방법

- 서류심사, 실무자 인터뷰

4. 심사 결과 발표

- 1) 2021년 2월 10일(수)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 홈페이지 및 개별 이메일 연락
- 2) 선정된 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에 아동안전보호정책 이행확약서 제출(*추후 별도 안내 예정)

IV.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1년 1월 28(목) ~ 2021년 2월 5일(금)

2. 신청 시 접수할 서류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금번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신청 공문 2. [서식1] 2021 난민아동지원사업 협력기관 신청서 1부 3. 세이브더칠드런 사업 전용계좌 통장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아래 제시된 서류는 협력기관 선정 후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므로, 사업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추가 제출서류	<p>[협력기관 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비 입금 통장사본 (기관 명의) 2. 아동안전보호정책 이행확약서 3.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따른 사명선언문 4. [서식2] 사업 담당자별 개인정보 및 초상권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각종 서류 제출 시, 개인식별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는 반드시 삭제하여 제출함.
개인식별고유번호 포함 시 제출서류는 일괄 반송처리 함
- ※ 선정 이후 제출 필요한 서류는 추후 제공 예정

3. 서류양식 배포처

-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hnchild.sc.or.kr/>

4. 접수 방법

- 사업 담당자(강시애) 이메일로 신청 서류 일체 발송(E. siae.kang@sc.or.kr)
- 문의전화: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 사업3팀 강시애 사원 ☎ 062-942-1177

V. 일정 및 선정 절차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정	비고
협력기관 공개모집 (신청서 접수)	1/29(금) ~ 2/5(금)	세이브더칠드런 이메일 제출
심사 진행	2/8(월) ~ 2/9(화)	제출 서류 보완 요청, 실무자 인터뷰(필요 시)
협력기관 발표	2/10(수)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이메일 연락
추가서류 일체 제출	2/15(월) ~ 2/17(수)	세이브더칠드런 이메일 제출
업무협약 체결	2월중 (상호 협의 후 결정)	

[참고자료] 아동안전보호정책 요약본

협력기관 직원을 위한 아동안전보호정책

세이브더칠드런 가치와 원칙

아동학대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해를 입거나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할 때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과 착취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전 세계, 어느 사회에서든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모든 직원, 기관을 대표하는 관련자, 및 협력기관 직원, 아동을 만나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직무 수행 과정과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약속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을 약속합니다.

- **인식(Awareness):** 우리는 모든 직원, 협력기관과 기관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동학대 및 성 착취의 문제와 그것이 아동에게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높은 의식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아동과 그 가족에게 기관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행동 기준과 문제점을 알리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 **예방(Prevention):** 우리는 아동안전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모범적인 실천을 통해 직원과 기관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동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학대와 성 착취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보고(Reporting):** 아동의 안전에 있어 의심 상황이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발생시 이를 따를 것입니다.
- **대응(Responding) :** 우리는 아동학대 가능성의 우려가 있을 때 아동 최선의 이익에 기반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직원, 기관을 대표하는 관련자, 및 협력기관 직원, 아동을 만나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동하는 것을 아동안전 보호정책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

1.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착취, 방임 등 아동학대를 하지 않는다.
2. 인종, 종교, 성별, 장애, 언어, 연령,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아동을 차별하지 않고, 아동 고유의 의존성과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을 악용하지 않는다.
3. 아동이 개성과 특별함을 가진 독립적인 주체로서 스스로의 의견을 표현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4. 아동과의 관계에 있어 (심리적, 물리적으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5. 아동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6. 아동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아동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7. 아동안전보호정책 준수를 위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세이브더칠드런 모든 직원, 기관을 대표하는 관련자 및 협력기관 직원, 아동을 만나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염려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동안전보호를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
- 아동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받아들입니다.
- 아동안전보호정책의 위반 혹은 의심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세이브더칠드런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관련자 외 모든 사람에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세이브더칠드런 담당자(02-6900-4488, childsafeguarding@sc.or.kr)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